● 제323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4. 2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최민규 의원 발의 】

의안번호 1710

Ⅰ. 개정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 출 자 : 최민규 의원 (찬성38인)

나. 제 출 일 : 2024. 4. 3.

다. 회 부 일 : 2024. 4.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최근 연인을 상대로 한 데이트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은 제한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도 미비한 상황이라 피해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지원방안도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3호)

○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4조의4)

3. 참고사항

○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흡한 실정으로 현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정안은 정의 규정과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적정한 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2 총괄적 검토

(1) 입법 배경 및 취지

○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일종으로 애인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폭력범죄”[1] 혹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폭력”[2]으로 정의함. 여기서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

---

1) 출처: 여성가족부(2023).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4p, 정의참고
2) 출처: 한국여성의전화(2018),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참고

이 있는 관계부터 넓게는 맞선,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함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할 수 있음.[3)]

- 참고로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하여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여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어 '교제폭력' 용어 사용하기도 함[4)].

○ 데이트폭력은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법률상 혼인 또는 사실혼 등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가정구성원 관계가 아닌, "애정"을 기반으로 한 연인 간 교제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5)]

○ 현재 또는 과거 연인관계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스토킹행위는 "행위방식"에 초점을 둔 반면 데이트폭력은 "관계"가 초점이므로 스토킹행위가 데이트폭력의 한 유형이 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교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구별되는 점이 있음. [6)]

---

3) 출처: 한국여성의전화(2018).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4) 출처: 한국여성의전화(2018).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5) 출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1대 제398회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5인)검토의견 중
6) 출처: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p.56.)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당시 관계를 기준으로 스토킹 피해의 가해자 유형을 살펴본 결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 34.9%로 가장 높았고, 과거 사귀었거나 피해 시점에는 헤어졌던 사람 또는 피해 당시 사귀고 있던 사람이 29.3%, 친구 또는 학교나 직장 구성원이 각각 14.1%, 당시 배우자

○ 데이트폭력 사건은 최근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사망한 20대 여성의 사건[7]을 비롯해 경미한 수준에서 방치될 경우 사망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고 범죄 발생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데이트폭력 범죄 [8]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3,382건에서 2022년 15,947건으로 19.1% 증가하였고, 전체 범죄 건수의 58.5%를 폭력범죄가 차지하고 있음. 특히 폭력범죄의 경우 2021년 대비 8.6%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다양한 원인으로 규명될 수 있는 기타 유형도 2021년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데이트폭력 범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3,064	13,382	15,947
강력범죄	747	685	688
폭력범죄	8,197	8,593	9,338
지능범죄(직무유기, 사기 등)	1,221	894	1,024
풍속범죄(성풍속범죄 등)	695	792	847
특별경제범죄	101	57	45
마약범죄	23	21	18
보건범죄	2	2	1
교통범죄	82	59	43
기타	1,562	1,936	3,660

또는 업무상 접하는 사람이 각각 6.8% 등으로 나타남.

[7] 출처: “전 남친에 폭행당해 사망한 20대…데이트 폭력 신고 11번 했다” .매일신문.2024.4.18

[8] 출처: 「2022년 경찰통계연보」경찰청.2023.1, 320p,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애인

○ 매년 데이트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요청 건수[9] 는 4천 건으로 전체 상담건수 중 90% 이상이 여성임. 여성 피해자는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특성상 소극적인 신고로 피해사실을 밝히기 어렵고 적극적 해결을 위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 전국 가정폭력상담소“데이트폭력” 상담내용

(단위 : 건, %)

연도 구분	계 / 비율	가정폭력 외 상담							
		소계	성폭력	성매매	성상담	중독	기타		
							스토킹	데이트	기타
2021	428,911	109,574	51,173	669	3,882	1,297	1,461	4,174	46,918
	100.0	25.5	11.9	0.2	0.9	0.3	0.3	1.0	10.9
남성	120,959	22,044	3,744	70	2,154	598	157	413	14,908
여성	307,952	87,530	47,429	599	1,728	699	1,304	3,761	32,010
2022	454,704	110,860	52,643	418	3,933	922	2,115	4,147	46,682
	100.0	24.4	11.6	0.1	0.9	0.2	0.5	0.9	10.3
남성	132,270	23,101	4,997	92	2,374	416	234	255	14,733
여성	322,434	87,759	47,646	326	1,559	506	1,881	3,892	31,949
2023.6.	**230,713**	**54,373**	**25,950**	**279**	**1,941**	**580**	**1,886**	**1,960**	**21,777**
	100.0	**23.6**	**11.2**	**0.1**	**0.8**	**0.3**	**0.8**	**0.8**	**9.4**
남성	**71,411**	**11,532**	**3,128**	**81**	**1,083**	**198**	**281**	**220**	**6,541**
여성	**159,302**	**42,841**	**22,822**	**198**	**858**	**382**	**1,605**	**1,740**	**15,236**

※ 2018년도부터 스토킹·데이트폭력 항목 추가

※ 2021년도부터 가정폭력·스토킹 항목 추가, 스토킹·데이트폭력 항목 분리

(2) 입법 동향 및 쟁점

○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0건의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를 제외하고 ‘데이트폭력’ 별도 법안은 현재 2건이 계류 상태임.

---

9) 출처: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보고서」여성가족부.2023.6

[표 3] 데이트폭력 관련 국회 법안 발의 현황

법률제명	대표발의	발의일	소관 위원회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 의원	2020-11-10	여성가족 위원회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 의원	2022-07-15	법제사법 위원회

- 참고로 데이트폭력 관련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표 4]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입법례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2017. 9. 28. 일부개정 신설)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을 말하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폭력과 스토킹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2조제3호 (2023. 5. 1. 일부개정 신설)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 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제2조제2호 (2023. 8. 16. 일부개정 신설)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 행위를 말한다.
수원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2조제3호 (2023. 11. 16. 일부개정 신설)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 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 행위를 말한다.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2023. 12. 28. 일부개정 신설) “데이트폭력”이란 남녀간 **교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제2조제2호 (2024. 2. 13. 제정)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 행위를 말한다.

○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단순 애정 문제로 치부되던 데이트폭력을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전환 뿐 아니라 데이트폭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범죄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입법이 검토되고 있음.[10)]

○ 국회 법안 발의도 입법배경 취지는 공감하나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처벌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범죄구성요건을 위한 교제에 대한 범위와 행위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렵고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폭력 '가해자'를 특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로 이룸[11)].

○ 예컨대 「가정폭력방지법」[12)], 「성폭력방지법」[13)], 「성매매피

---

10) 출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1대 제398회「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5인)검토의견 중

11) 출처: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제21대 제382회「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인)검토의견 중 관련부처 의견

- (여성가족부)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데이트폭력 방지법 제정은 '처벌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고, 이와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이 기존 법체계에 보다 부합하며, 교제관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스토킹 관련 내용을 데이트폭력 정의에 포함할지 검토가 필요하며,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의 경우, 각 범죄의 정의를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이를 방지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바 데이트폭력의 정의, 처벌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선행한 후 방지법 제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법무부) , '교제', '데이트' 등 다소 모호하고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처벌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해 질 수 있으며 당사자 상호간 '교제' 또는 '합의' 여부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법 집행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해자보호법」[14] 의 경우 각 범죄의 정의를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이를 (폭력) 방지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바,

○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데이트폭력의 정의규정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이나 처벌법과의 관계에 대한 쟁점이 별도의 제정안 입법에 신중을 기하고 법안 보류의 배경으로 이해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조문별 검토

(1) 정의 (안 제2조제3호. 신설)

개 정 안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 안 제2제3호는 ‘데이트폭력’ 유형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교제 관계, 혹은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이라고 규정함.

○ 현행 조례 제2조제1호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정의에 의거하여[15]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이미 여성폭력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음.

---

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정의)**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개정안은 기존의 정의 규정에서 별도의 정의규정 신설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구체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폭력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안 제2조제3호의 논리적 근거는 타당해 보임.

○ 다만 안 제2조제3호의 '교제 관계'라 함은 혼인과 같은 법적 관계와 달리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현 조례 개정은 처벌규정과는 무관하게 범죄에 이르지 아니한 사전 피해예방부터 경미한 피해에 대해 보호·지원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 14조의4. 신설)

개 정 안
제14조의4(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시장은 데이트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사업 2.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법률상담 지원사업 4. 피해 관련 관계 기관에 긴급응급조치·보호 요청 지원 5. 데이트폭력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정책 개발 지원 6.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안 제14조의4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안전, 상담 · 의료, 법률, 긴급응급조치, 조사 · 연구, 교육 · 홍보사업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의 4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8조1항[16]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전 검토가 요구됨

- 조례 제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무의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것은 동법[17]과 상위 법령[18]의 목적과 같으며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2호[19]에 따라 여성의 보

---

16)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17)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9)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 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 · 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입법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이에 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순 애정 문제’ 혹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던 데이트폭력을 심각하고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경미한 단계부터 적극적 개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취지로 보임.

○ 한편 서울시는 실제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강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운영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20].

○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3)에 따르면[2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피해자보호법」,「정보통신법」, 「가족폭력방지법」,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20) 출처: 여성가족부(2023.4).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서울특별시), 서울시 내부자료.

21) 출처: 여성가족부(2023.4).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등 개별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이 밖에 데이트폭력 실태조사(2017), 데이트폭력 대응매뉴얼 개발(2018), 성평등캠퍼스 운영(2021) 사업 추진과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음.[22)]

○ 개정안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행위에 따라 각 개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지원체계를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피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 아울러 여성폭력 사각지대 보완과 피해자 보호·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개입의 방향과 의지를 명확히 한다는 의의가 있음.

○ 다만 향후 데이트폭력 별도법이 제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기존 법령 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추가적인 보완과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집행기관 의견(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서울시는 동 조례 제2조 제1호의 정의 규정[23)]에 따라 데이트

---

22) 출처: 「서울시, _데이트폭력, 결혼 후 가정폭력으로도 이어진다」.보도자료.2018.1.30.
「데이트폭력 참지말고 전화하세요 02-1366」.보도자료.2016.7.29.
「서울시, ‘‘성평등 캠퍼스 조성 위해 11개 대학과 손잡는다‘‘」.보도자료.2021.12.14.

23)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가능하여, 실제로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상담, 법률·의료지원 연계, 예방 교육 등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데이트폭력 별도법 제정 이후 내용을 반영할 필요 있음.

4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정의 규정과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데 의미가 있음.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인권의 문제임에도 사회적 문제보다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되어 여성 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통한 지원체계 확대와 제도적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됨.

○ 다만 본 개정안은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규정과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데이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폭력 별도법이 제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기존 법령 등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문 의 처
한송희 입법조사관 (02-2180-8146)

붙임1	서울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24.4.기준)

연번	사 업 명	담당 부서
1	해바라기센터 운영(데이트폭력 포함)	양성평등담당관
2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데이트폭력 포함)	
3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데이트폭력 포함)	
4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데이트폭력 포함)	
5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데이트폭력 포함)	
6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재발방지 사업(데이트폭력 포함)	
7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 서포터즈 운영(데이트폭력 포함)	
8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데이트폭력 포함)	
9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운영(데이트폭력 포함)	
10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데이트폭력 포함)	
11	스토킹범죄 예방 캠페인(데이트폭력 포함)	
12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데이트폭력 포함)	
13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데이트폭력 포함)	
14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데이트폭력 포함)	
15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데이트폭력 포함)	
16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17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시설, 그룹홈,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18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의료·법률·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	
19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사업	
20	불법 성산업 감시 및 예방사업 운영	
21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운영	
22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23	시립 늘푸른교육센터 운영	
24	서울 성착취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	
25	장애 특성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연번	사 업 명	담당 부서
26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데이트폭력 포함)	가족다문화담당관
27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운영(데이트폭력 포함)	
2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미취학동반자녀 양육비	
29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추가 지원	
30	가정폭력피해자 주택월세 지원	
31	가정폭력피해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2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데이트폭력 포함)	
33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34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35	폭력피해자 주거운영 자립상담원 지원	
36	폭력피해자 임차보증금 지원	
37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보호시설 운영	
38	안심귀가스카우트	1인가구담당관
39	안심택배함 운영	
40	안심이 총괄관제센터 운영	
41	안심지킴이집 운영	
42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43	안심장비지원사업	